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14.7.15.] [법률 제12254호, 2014.1.14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

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, 기 구축·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·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,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(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나. 기 구축·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(제16조의3 신설).

다.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제33조의4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4년 1월 14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

◎법률 제12254호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도로·철도·항만·댐·교량·터널"을 "교량·터널·항만·댐"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

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4(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"소규모 취약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·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권한중 다음 각호"를 "권한 중 다음 각 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
6.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

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.